

제1592호
2019. 3. 28.(목)

발행인: 동작구청장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이창우
김미자
전화: 820-1458
FAX: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작구보

차 례

◎ 규 칙		1
	제866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공 고		
	제2019-397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4
	제2019-401호 :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5
	제2019-40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2019-41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3
	제2019-411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제2019-41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8
	제2019-41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2
	제2019-41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제2019-420호 : 설계공모 공고	68
	제2019-424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70
◎ 인사발령		82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규 칙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6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 제외) 배출자의 대문 또는 가게 앞에 배출하고, 배출시간은 1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성상별”을 각각 “종류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산되거나”를 “조례 제8조제2항의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가 날리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고무 등(500리터 이상)을 설치하되,”를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작된 500리터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 성상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얇은”을 “연한”으로 하고, “연주황색(반투명)”을 “연노랑색(반투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청 결 명 령 서

(☎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청결명령 이행 통보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동 ○○번지 ○○호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청결명령을 이행하도록 통보하니 ○○년 ○○월 ○○일까지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기 기일내에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도록 한 후 비용전액(수집·운반비+처리비(반입수수료)+장비사용료)을 징수할 것이며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결유지 미이행 사항
-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년 월 일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생활폐기물 주3일 수거제를 주6일 수거제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배출일자 및 배출시각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현행화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순화 및 어순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배출 일자를 주 3일(3회)에서 주 6일로 변경(토요일 제외) (안 제2조)
- 나. 배출 개시 및 종료시간 전후 각각 1시간씩 확대(안 제2조)
- 1) 18시 퇴근 전 배출 희망 민원 반영하여 개시시간 조정 : 18시 → 17시
 - 2) 야간 시간대 주민 편의를 위해 배출 종료시간 1시간 연장 : 21시 → 22시
 - 3) 배출장소를 ‘대문 또는 가게 앞’으로 명시
 - 4) 천재지변, 사고발생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배출일자 일시적 조정 등 신속대응을 위해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은 존치
- 다. 어려운 용어 순화 적용 : 성상 ⇒ 종류, 비산 되거나 ⇒ 먼지가 날리거나(안 제2조~3조)
- 라.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상 현행화 : 연주황색 ⇒ 연노랑색(안 제4조)
- 마. 제10조 ‘청결명령’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청결명령서’ 문구 일부 정비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39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 2. 공고기간 : 2019. 3. 28. ~ 4. 11.
- 3. 공고대상 : 불법명의 차량 1대

연 번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 명령사유
1	08조2728	에쿠스	야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거사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다.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자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01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 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전년도에는 재난이 16회 발생하여 피해는 인적피해 1건(부상 1명)이 있었으며, 재난 유형별로는 붕괴사고 2건, 화재사고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의 재난발생현황은 화재사고가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붕괴사고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26개 부서이며,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6종으로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방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하였으며, 참석 인원은 797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자율방재단 관련 교육·훈련 또한 4회에 걸쳐 546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특히, 각종 재난대비 시책 및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보도·기고·안전캠페인 실적은 26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690백 만원을 100% 확보했습니다.

-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적립금 616백만원 대비 74백만원 증가 한 것이며, 지난해 보다는 2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액은 5년 평균 325백만원이며, 상도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붕괴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18년에는 494 백만원이 소요되어 2017년보다 169 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등급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2등급 상승 하였습니다.

※ 지역안전도 진단 [(안전) 1등급/그룹'가' <-----> 10등급/그룹'마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2개의 건축물 중 22개의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 보강 완료되어 39%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13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 는 1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기존 공공시설물 2개소(약수도서관, 상도2동 주민 센터)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리 구는 D-E급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보강 및 안전점검을 해왔으며, 재 난관리 역량은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현장조치 매뉴얼, 지역안전지수 1등급, 재난관 리기금 확보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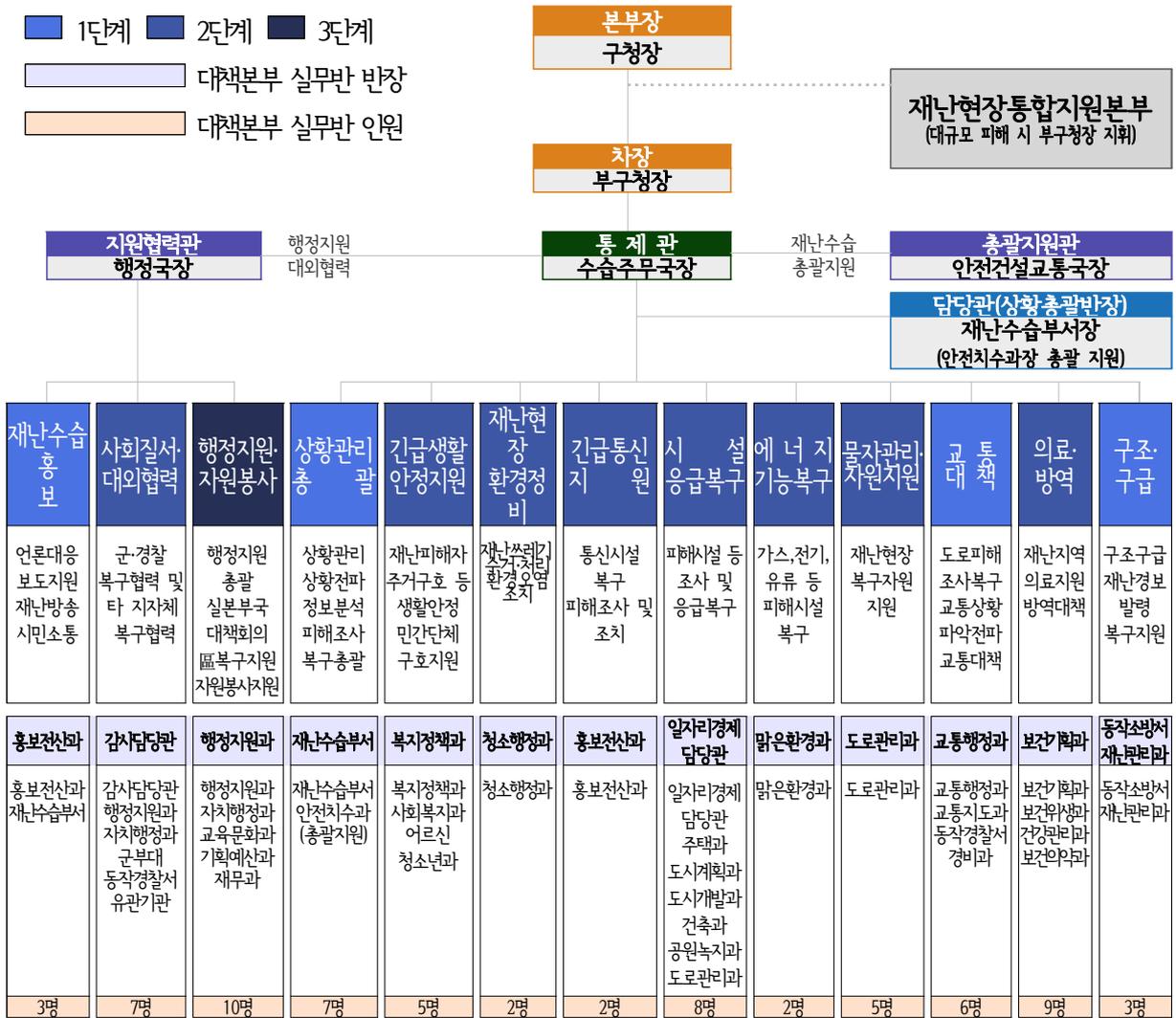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8.06.16.	동작 트인시아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신대방동)	- 부상 1명	- 분진망 설치 등 현장복구 - 안전휀스 재설치	-
18.09.07.	상도초 병설 유치원 붕괴 (상도동)	- 유치원 일부 붕괴 및 지반 침하 발생	- 붕괴 부분 긴급 철거 - 분진망 및 가림막 설치	유치원 복구는 교육청에서 논의 중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 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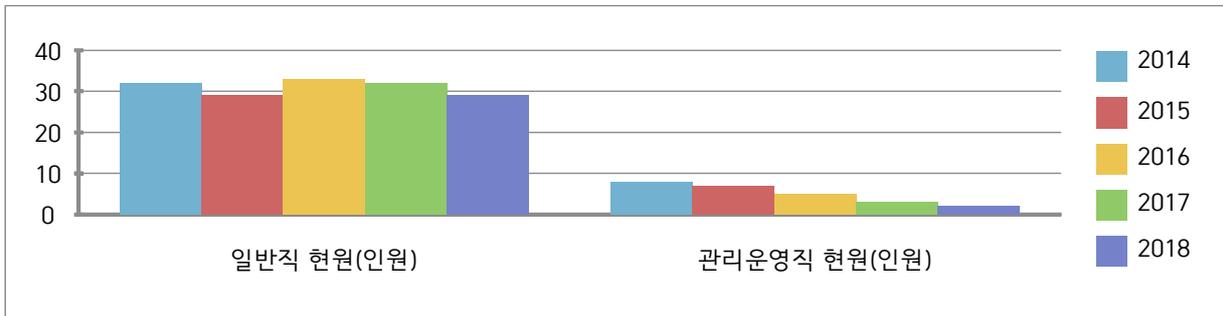


-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제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을 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 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실무반 : 13개반 총 82명(반장 13, 반원 69) 실무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반원 부서별 1~2명)
-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국·과장이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관리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운영직		
계	정원	34	32	-	1	5	9	10	7	2	-
	현원	31	29	-	1	9	6	5	8	2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직 현원(인원)	32	29	33	32	29
관리운영직 현원(인원)	8	7	5	3	2

☞ 일반직 및 관리 운영직 인원의 증감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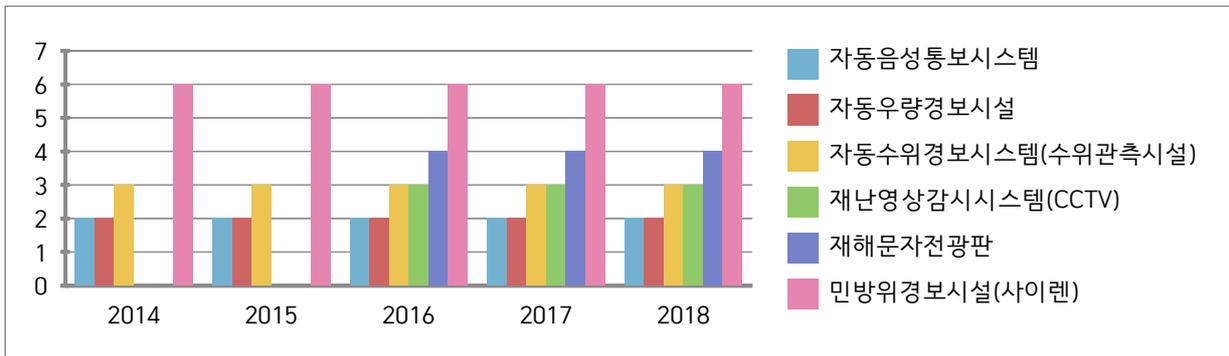
- 관리운영직 중 일반직 전환자가 늘어 관리운영직의 숫자가 감소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자동우량경보시설	2	흑석빛물펌프장, 구청 옥상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도림천(신대방동)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	도림천(신대방동)
재해문자전광판	4	도림천(신대방동)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동작구청, 동작초등학교, 사당5동 주민센터, 상도3동 주민센터, 송실대학교, 중앙대학교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	2	2	2	2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2	2	2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3	3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	-	3	3	3
재해문자전광판	-	-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6	6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 도립천 고립방지 시스템 및 대피목적의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유지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8. 해빙기 재난관리 안전교육	2.2.	동작구	221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삼폐소생술 훈련 등)	5.8.~5.18.	동작구	532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무자 과정	1.~12.	서울시인재개발원 공군항공안전단	22	
재난관련교육(사이버 등)	1.~12.	서울시인재개발원 공군항공안전단	22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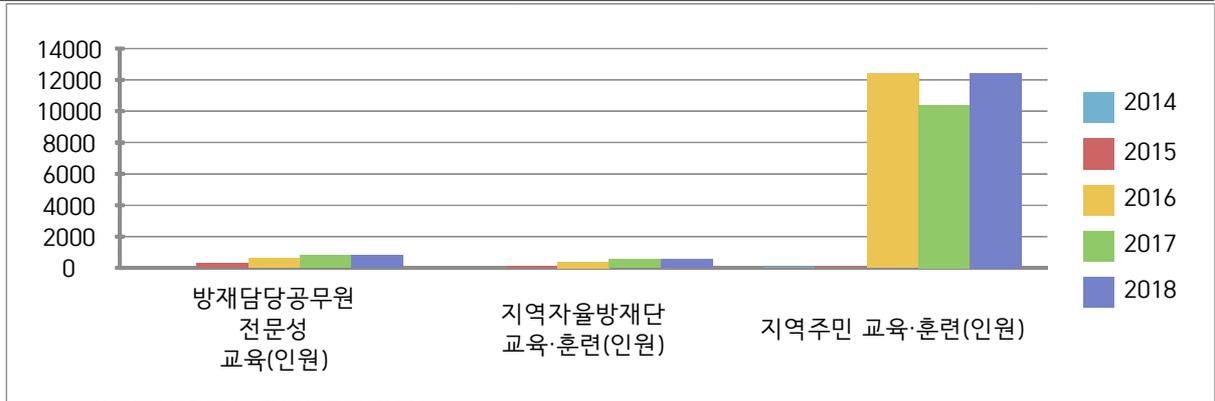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8.2.2.	동작구청 5층 대강당	221	해빙기 시설물 관리, 위험 사항 파악	동작구	
18.5.8.~18.	동작구청 5층 대강당	100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실습	동작구	
18.10.26.	구로구청 5층 대강당	50	서울시 자율방재단 양성교육	서울시	
18.10.30.	동작구청 5층 대강당	175	화재안전교육	동작구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주 관	비 고
응급수영	18.2.~11.	관내 수영장 등	460	응급수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작구	만족도 99%
심폐소생술 체험	18.1.~12.	보건소, 학교 등	11,96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론 및 실습)	동작구	열린보건소 513명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7	288	589	792	797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2	76	391	561	546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40	55	12,407	10,398	12,420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소소심훈련(공무원), 재난안전단체 자체훈련(자율방재단) 등 재난교육에 대한 관심 상승으로 훈련 참석 인원 증가

라. 안전보안관(안전감시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18.1.17.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6	안전체험관 체험	동작구	
18.4.12.	시청 서소문별관	14	서울시 안전정책 교육	서울시	
18.5.14.	동작구청, 서울공고	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동작구	
18.5.16.	동작구청, 서울공고	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동작구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41	1,098	1,098	-	-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1	1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내 집 앞 눈치우기 활성화 겨울철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전파	18. 1.	지하철역 시장 등	339
2	2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설 등 재난취약시기 안전관리 홍보 국가안전 대진단 집중 홍보	18. 2.	지하철역 시장 등	
3	3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해빙기 안전 캠페인 생활주변 위험시설 현장 순찰	18. 3.	지하철역 시장 등	
4	4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지진, 화재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안전신문고 앱 참여 활성화 홍보	18. 4.	지하철역 시장 등	339
5	5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선거로 인해 미시행	-	-	
6	6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우기 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18. 6.	지하철역 시장 등	
7	7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폭염 대비 주민행동요령 안내 무더위쉼터 안내	18. 7.	지하철역 시장 등	550
8	8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전파 무더위쉼터 안내	18. 8.	지하철역 시장 등	
9	9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명절 전후 주변안전점검 홍보 귀성길 교통안전사고예방 홍보	18. 9.	지하철역 시장 등	
10	10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가을 야외활동 대비 시설 점검 건조기 산불예방 홍보	18. 10.	지하철역 시장 등	511
11	11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지진 대비 주민행동요령 전파 산불 예방 홍보	18. 11.	지하철역 시장 등	
12	12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 전파 집단거주시설 화재 예방 홍보	18. 12.	지하철역 시장 등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동작구, 초등학교 하굣길 안전지도사 투입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는 사업	1.11.	문화일보 등	
2	동작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내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1.18.	아시아경제 등	
3	해빙기 재난 미리 관리...동작구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	2.2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이 구청 강당에서 열림	1.31.	뉴스1 등	
4	학교 앞에선 천천히...동작구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4월까지 남성초 앞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2.21.	뉴스1 등	
5	서울 동작구, 460가구에 가스자동차단 타이머 무상 설치	재난취약가구 대상 전기가스 안전점검 시행 및 가스자동차단 타이머 설치	2.25.	국민일보 등	
6	옹벽 안전점검 하는 이창우 구청장	사당4동 옹벽 점검	2.28.	뉴스1 등	
7	안전에 전시행정은 없다...동작은 사후약방문 없다	이창우 구청장 본동, 흑석동 등 취약지역 점검	3.5.	서울신문 등	
8	장기방치공사장 점검하는 이창우 동작구청장	상도3동 공사장 점검	3.7.	뉴스1 등	
9	전통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이창우 구청장 성대시장 캠페인 실시	3.9.	뉴스1 등	
10	동작구,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용품	25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안전조끼, 응급용품 등 지급	4.2.	국민일보 등	
11	물에 빠져도 침착하게...동작구 가족 응급수영 교실	응급수영 교실 운영	4.3.	뉴스1 등	
12	동작구, 중형건축물 262곳 일제 안전점검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등 집중 점검	4.6.	뉴스1 등	
13	동작구, 재난 완벽대비 위해 14일부터 맞춤형 대응 훈련	5.14~18.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2.	국민일보 등	
14	신대방동 문창초교 앞에 CCTV 달린 표지판 설치	초등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 다기능 표지판 2개 설치	5.2.	문화일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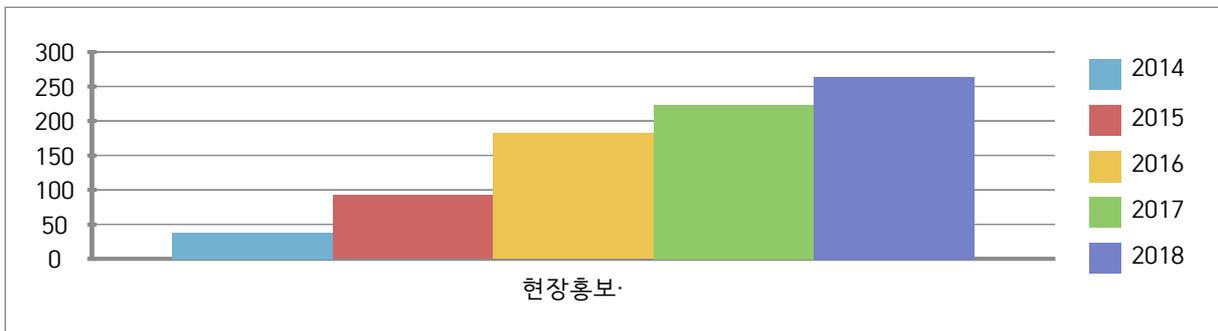
15	동작 그늘막은 더위잡고 사고도 줄여요	그늘막 50개소 설치 운영	5.15.	서울신문 등	
16	동작구, 20년 이상 노후경로당, 정밀 안전진단 실시	8개 경로당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점검 후 안전등급 결정	5.18.	서울신문 등	
17	동작구, 골목길에 미니 소방서	소방차 진입이 힘든 44개 구간에 소화기 보관함 설치	5.24.	세계일보 등	
18	서울 동작구, 강남중 앞 보도육교 철거	노후화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신설	5.29.	이데일리 등	
19	동작구, 폭염대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경로당 등 158개소를 지정, 운영	5.31.	국민일보 등	
20	동작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추진	폐수배출업소 35개소 및 하천 2개소 대상,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	6.26.	전국매일신문 등	
21	동작구, 장애물없는 보행로·공공건물 디자인 적용	안전 향상 등을 위해 4개소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7.9.	뉴시스 등	
22	동작구, 안전 등하굣길 조성 '팔 걷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배포	학생들이 직접 위험 안전요인을 조사, 안전지도를 제작·배포	7.15.	아주경제 등	
23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전문상담가 양성	보육교직원 60명 대상, 12월까지 30회에 걸쳐 진행	7.27.	서울신문 등	
24	동작구, 저소득 어르신에 냉방물품 지원	온열질환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 냉매트 등 물품 지원	8.5.	헤럴드경제 등	
25	동작구, '우리동네 안심마을 탐방' 실시	마을안전봉사단 등 각 동별 주민들이 범죄예방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8.6.	뉴시스 등	
26	동작구,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안전점검	800여 세대 대상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지원	8.8.	뉴시스 등	
27	‘찾동’부터 사물인터넷까지...지자체, 고독사 예방대책 강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24시 스마트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8.10.	한겨레 등	
28	태풍 대비 유압식 차수판 점검하는 이창우 동작구청장	태풍 대비 점검	8.21.	뉴스1 등	
29	동작구, 태풍 '솔릭' 대비 전 직원 비상근무	태풍 대비 비상태세 돌입	8.22.	뉴스1 등	

30	동작구, 범죄예방기법 활용... '도로명 주소 표지판' 설치	취약지역 18곳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표지판 설치	8.29.	문화일보 등	
31	상도동 유치원 붕괴 "철저히 수사하라" 들끓는 여론	상도초 병설유치원 붕괴 관련	9.9.	경향신문 등	
32	분진에 소음...상도동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상도초 병설유치원 붕괴 관련	9.10.	조선일보 등	
33	'상도동 공사장 붕괴' 조사위 새로 구성...외부추천 전문가 영입	상도초 병설유치원 붕괴 관련	9.11.	연합뉴스 등	
34	동작구, 메르스 유사증상시 일상접촉자 수준 대응	메르스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대응반 및 24시간 비상연락망체계 가동	9.12.	뉴시스 등	
35	동작구, 유치원 붕괴 3차 조사위 구성...학부모도 참여	상도초 병설유치원 붕괴 관련	9.14.	뉴스1 등	
36	서울 동작구, 불량 공중선 전면 정비	6개 구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량공중선 정비	9.14.	이데일리 등	
37	라돈 위험에서 주민 안전 지킨다..동작구, 라돈측정기 대여	동주민센터 등에 라돈 간이 측정기 34대 배치	10.5.	서울신문 등	
38	초미세먼지 28% 감축...동작구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토론회	11월 1일,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 20여명 참여	10.31.	뉴스1 등	
39	동작구 '2018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본격 추진	제설, 한파, 화재안전, 보건, 민생 5개 분야 운영	11.15.	아시아경제 등	
40	동작구,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전통시장 5개소에 보이는 소화기함 100대 설치	11.19.	시민일보 등	
41	동작구, 취약계층 대상 '찾아 가는 라돈측정 서비스' 실시	19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라돈측정 서비스 제공	12.7.	헤럴드경제 등	
42	동작구 '안전 우선, 주민 중심' 조직개편... 재난 컨트롤타워 신설	재난 컨트롤타워 '안전재난담당관' 신설	12.12.	문화일보 등	
43	"무섭지만 갈 곳 없어"...붕괴 위험 E등급 거주민들 '한숨'	신노량진시장 관련	12.15.	tv조선 등	
44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놀이터...새해도 생활밀착 동작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 등	12.24.	서울신문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38	92	182	223	264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 2018년 재난관리 관련 홍보실적은 재난, 범죄, 환경 등 다방면에서 예방 및 안전 관련 활발한 홍보활동이 있었음. 이 외에도 재난 사고 관련 보도가 많이 이루어 졌음.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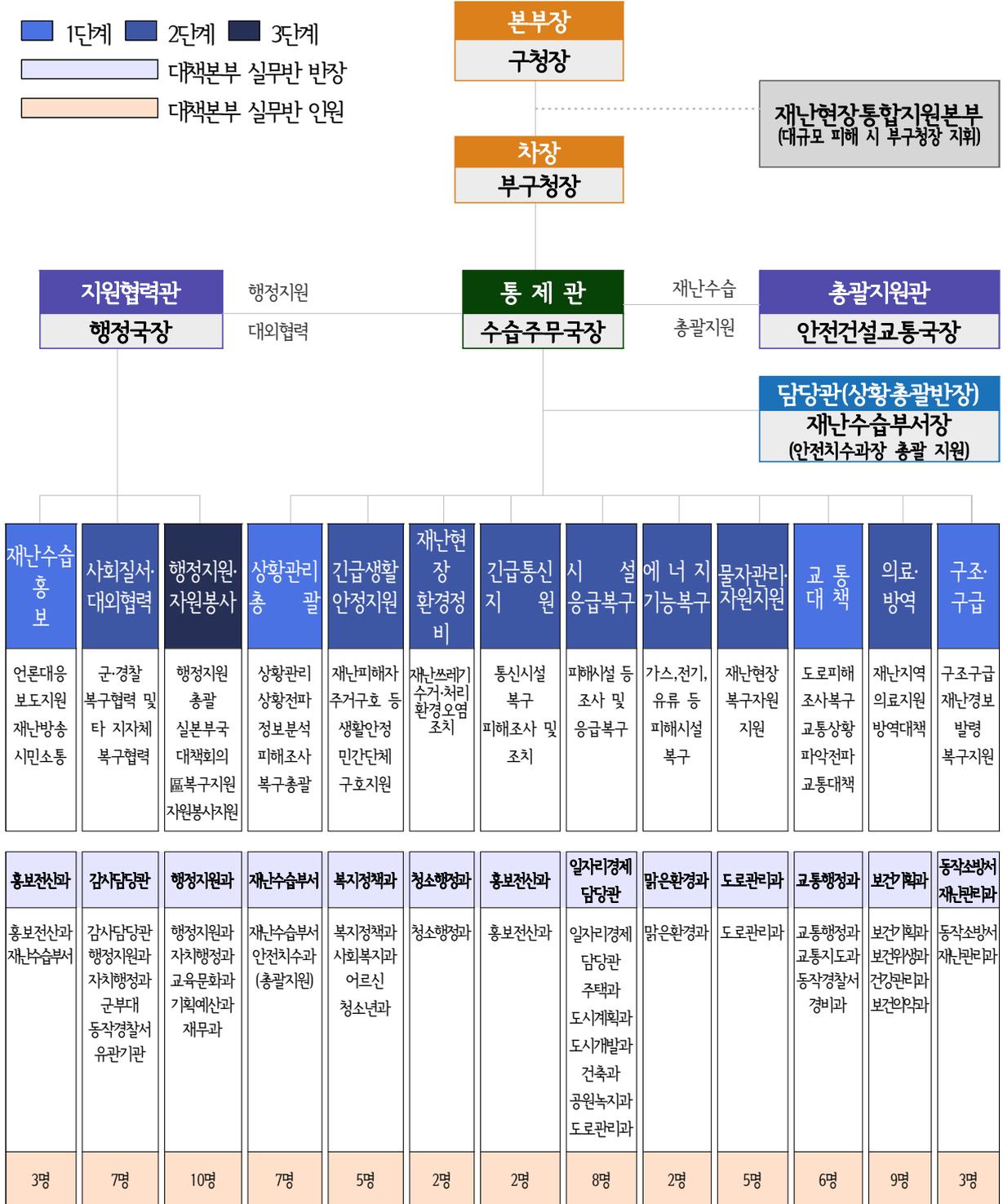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 원 : 19명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28명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 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1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15명	- 기금의 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 기금의 결산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구청장 - 13개반 81명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 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구청장 → 시·도지사 → 안전행정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 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실무반 : 13개반 총 82명(반장 13, 반원 69) 실무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반원 부서별 1~2명)
-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국·과장이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실 무 반	실 무 부 서	주 요 임 무
재난수습·홍보반	홍보전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지원, 왜곡정보 대응 • 재난방송, 각종 매체 활용 구민소통 및 홍보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소관부서, 안전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 총괄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동작경찰서 경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시설물 피해조사 및 복구 • 교통상황관리 및 교통정보 알림, 교통대책 시행
수색 구조·구급반	동작소방서 구조구급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고 및 재난상황 전파, 소방인력장비 활용 재난 초동대응 • 피해(예상)지역 경보방송 및 재난현장 구조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사회질서 유지 및 대외협력반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 및 민방위 및 타 지자체와 복구협력 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발생현황 조사 및 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구호 시행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 유관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등
시설응급복구반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 일자리경제담당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등 건축물, 공사장, 소상공 등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에너지 기능복구반	맑은환경과, 유관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전기, 수도 등 라이프라인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물자관리 자원지원반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능에 대한 장비, 자재, 시설 등 물자·자원 지원
의료·방역반	보건기획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 및 방역 등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등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관리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문화과,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회의 개최 등 행정지원, 자치구 행정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지원 등

○ 구성반 주요 역할·임무

실 무 반	실 무 부 서	주 요 임 무
재난수습·홍보반	홍보전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지원, 왜곡정보 대응 재난방송, 각종 매체 활용 구민소통 및 홍보
상황관리총괄반	안전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 총괄
교통대책반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상황관리 및 교통정보 알림 지하철, 버스 교통대책(운행시간 연장, 증차 등)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시설물 피해조사 및 복구
	도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시설물 피해조사 및 복구
수색 구조구급반	동작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신고 및 재난상황 전파, 소방인력장비 활용 재난 초동대응 피해(예상)지역 경보방송
	보건예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구조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사회질서 유지 및 대외협력반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경 및 민방위 및 타 지자체와 복구협력 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 발생현황 조사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구호 시행 등
	어르신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구호 시행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긴급통신 지원반	홍보전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시설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등
시설응급복구반	일자리경제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 등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주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및 재개발 등 소관 공사장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도시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 등 소관 공사장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소관 공사장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에너지 기능복구반	도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에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맑은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 전기, 수도 등 라이프라인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물자관리 자원지원반	도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기능에 대한 장비, 자재, 시설 등 물자·자원 지원
	안전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기능에 대한 장비, 자재, 시설 등 물자·자원 지원
의료·방역반	보건기획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예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 및 방역 등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등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관리반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회의 개최 등 행정지원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자치구 행정응원(공무원, 자원봉사 등) 상황피악 등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교육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 성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동작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사태수습)	유해화학물질 오염 총괄 담당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지원협력관 (행정국장)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총괄
	총괄지원관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수습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사항 총괄
	담당관	유해화학물질 오염 담당 맑은환경과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1. 재난상황관리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긴급생활 안정지원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3. 긴급 통신 지원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4. 시설 응급 복구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5. 에너지기능 복구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6. 재난자원 지원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구 성		주 요 임 무
실무반	7.교통관련대책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8. 의료(방역)서비스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9. 재난현장환경정비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10.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11. 사회질서유지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12. 수색·구조·구급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등으로 접근 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13. 재난수습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 유관기관별 임무

유관 기관별	담당 임무
동작경찰서육군 제2051부대 212연대	1. 출입통제선 설치 2. 현장 출입통제 및 경비 3. 인명구조 경찰특공대 투입 4. 군 지원 대책
동작소방서	1. 인명구조 및 장비 투입 2. 구조 활동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사업본부남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1. 단전, 전력공급 2. 전기 안전관리
KT 동작지사	1. 긴급 통신시설 설치 등
남부도로사업소	1. 긴급 도로복구 등
남부수도사업소	1. 수돗물 차단 및 공급 2. 수도시설 안전관리 및 복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도시가스	1. 가스 안전관리 2. 구호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
대한적십자사 동작관악적십자 봉사단	1. 이재민 구호사업 2. 지원물품 및 자원봉사자 관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동작경희병원, 정동병원, 보라매요양병원, 서울요양병원	1. 사상자 후송 및 안치 2. 부상자 진료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2018.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에 관한 내용	2018.5.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사항	비고
정보통신	SK브로드밴드 동작종합정보센터	망 관리시스템 20종 등	SK브로드밴드	15.10.7	없음	
정부중요시설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15.5.9	없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흑석빗물 펌프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	-	1,400	침수 피해 최소화
18년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유지보수공사(연간단기)	- 하수도정비 L=1,200m - 도림천 및 반포천 5.19Km	18.2.~12.	1,290	노후관로 정비
만양로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관로 정비 D 450 ~ 800 mm , L=300m	18.3.~10.	500	노후관로 정비
상도역~중앙하이츠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관로 정비 D 450 ~ 700 mm , L=450m	18.3.~10.	500	노후관로 정비
노량진1동주민센터 현장 민원실 앞 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관로 정비 D900 ~ 1200mm, L=200m	18.3.~10.	400	노후관로 정비
노량진고시원 벚꽃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관로 정비 D250 ~ D800mm , L=260m	18.3.~9.	300	노후관로 정비
신대방동 346-25일대 하수관로 신설공사	-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D450~600mm, L=100m	18.3.~10.	150	노후관로 정비

악취저감 사업	- 맨홀악취기 설치 50개소 등	18.3.~10.	150	노후관로 정비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 대지면적 7,353㎡	17.10.~18.10.	50	침수 피해 최소화
신대방동지구 위험지구단위 저감 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 D1,200~3.1×2.0, L=1,954m	18.3.~10.	350	침수 위험지구 저감 목적
하수관거공사 공공측량 및 GIS DB갱신용역	- 하수관거 측량 및 DB 구축 : 3.0km	18.2.~12.	40	침수 피해 최소화
상도국주도서관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 국주도서관 외 2개소	17.12.~18.3.	14	내진 대비 정비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기)	- 하수도 V=1,000m³, - 세정 L=70km - 빗물받이 N=26,000	18.2.~12.	1,578	통수능 확보
하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기) 및 도림천 제방 정비사업	- 대방천 2.81km - 도림천 1.50km - 반포천 0.88km	18.2.~12.	240	하천 범람 방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 물막이판 70개 - 옥내역자변 60개	18.2.~12.	50	침수 피해 최소화
이목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D300~800mm, L=900m	18.3.~12.	1,000	하수관로 정비
신대방동 359-34알대 외 4개소 사유지 통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 하수관로 정비(유로변경) D 4 5 0 ~ 800mm, L=280m	18.3.~12.	500	하수관로 정비
대방천 복개확장(신설암거)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3.6×2.5m, L=955m	18.3.~12.	300	복개구조물 정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 수문 3개소(흑석산대방2호) - 펌프장 3개소(흑석, 신대방, 보라매)	18.2.~7.	70	구조물 정비
대방동 466-45(강남중학교 앞 보도육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보도육교철거 1식	18.5.~8.	81	시설물보수
노량진 14-36(한국냉장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신축이음장치 하부거더 보강 1식 - 신축이음장치 교체	18.5.~8.	30	시설물보수
노량진 14-36(한국냉장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높이제한시설 설치 및 - 안내표지판 설치	18.3.~4.	30	시설물보수
상도동 159-330 (상도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콘크리트 균열보수 9.8m - 단면보수 2.0㎡	18.4.~5.	4	시설물보수
사당동 206-8(신남정초교 앞 보도육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스텝 강관 배수로설치 L=8.0m	18.7.~8.	2	시설물보수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작성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본예산, 추가경정 예산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2,046	10,275	9,695	11,086	9,972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재난방지시설 정비 등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등을 진행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흡착분
	km	천매	km	kl	천매
총계	0.1	0.8	0.06	0.018	0.2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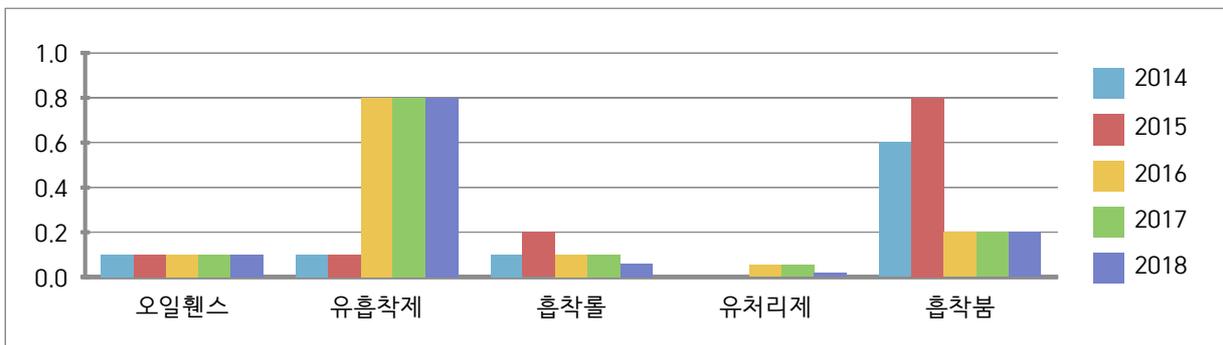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561	1,481	1,669	9	2,813	3
병원	13	840	996	7	2,483	3
보건소	1	8	29	2	0	0
의원	447	633	644	0	330	0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1	24,487	55	22,411	0	0	2	140	0	0	4	1,936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오일웬스	0.1	0.1	0.1	0.1	0.1
유흡착제	0.1	0.1	0.8	0.8	0.8
흡착물	0.1	0.2	0.1	0.1	0.06
유처리제	0	0	0.054	0.054	0.018
흡착분	0.6	0.8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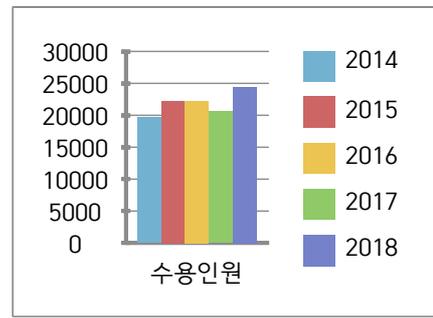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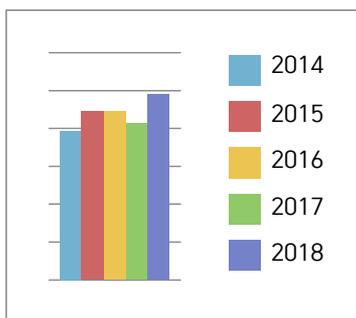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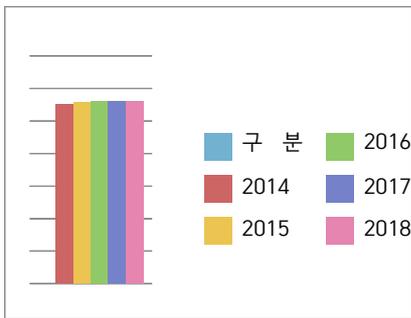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유치리제 정화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 확보 등 예년과 큰 변동 사항 없음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료시설수		551	557	560	561	561
수용시설	개소	35	36	36	55	61
	수용인원	19,723	22,250	22,250	20,634	24,487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 의료시설수는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 수용시설의 경우,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대비의 중요성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수용시설 수와 수용인원을 확충함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천공기	구조 공작차	배연차	로프총	공기 호흡기 세트	잠수 세트	구급차	절단	기타
총계	0	1	1	1	216	7	5	8	0

◆ 복구장비

구분	크레인	굴삭기	블도우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총계	0	0	0	0	1	1	47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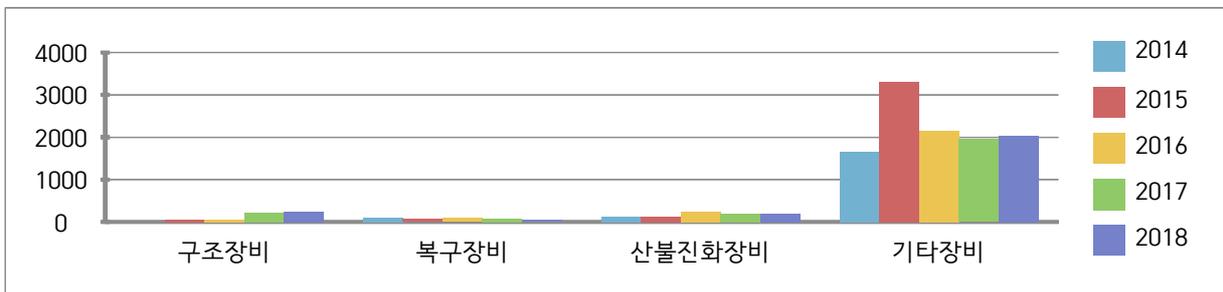
구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덤프	동력톱	진화도구
총계	0	0	1	26	7	172

◆ 기타장비

구분	용접기	컴프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총계	0	0	2,034	0	0	0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조장비	0	58	51	228	239
복구장비	98	66	95	80	49
산불진화장비	132	132	250	201	206
기타장비	1,661	3,300	2,146	1,954	2,034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복구장비 수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장비를 재산정하여 감소(모래살포기 등 제외)하였고 타 장비는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음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방사능	삭괘도	유기장	기타
인원	9	9	2	8	0	4	0	0	0	0	5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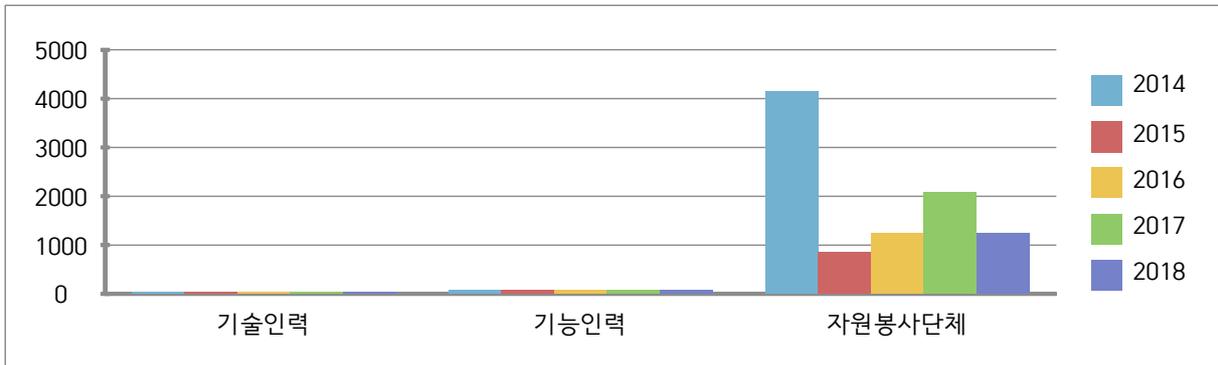
구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기타
인원	6	2	7	0	0	6	0	32	2	2	10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익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봉사대	기타	점심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1,235	178	0	0	70	0	262	362	90	273	0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술인력	37	37	37	37	37
기능인력	68	67	67	67	67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4,147	852	1,235	2,081	1,235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동작구 내 봉사단체 현행화 등에 따른 인력 조정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8.10월	행정안전부(서울시)	보통 등급(B)	
재난관리실태평가	2018.1~4월	행정안전부(서울시)	보통 등급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8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건축물	62	22	2	0	39%

* 내진성능 평가완료(8개소), 2019년도 2개소 내진보강 공사예정

-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을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진율	31	31	40	40	39



☞ 내진실적 및 내진율의 증감 원인

- 원인 : 2018년에는 내진설계 및 보강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7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3개소 중 2개소만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기존 공공건축물 89개소 내진성능평가만 실시함
 - 대책 : 2019년에는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국사비 예산(259백만원)을 확보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된 공공시설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임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미보강	미보강	미설치	지하
종합상황실	미보강	미보강	미설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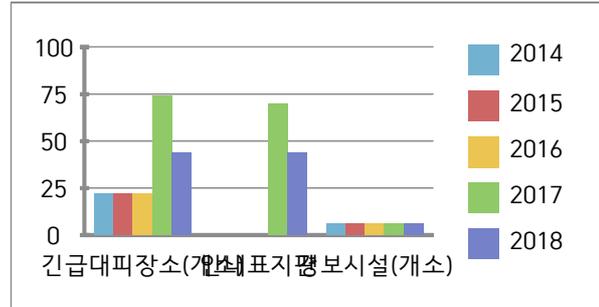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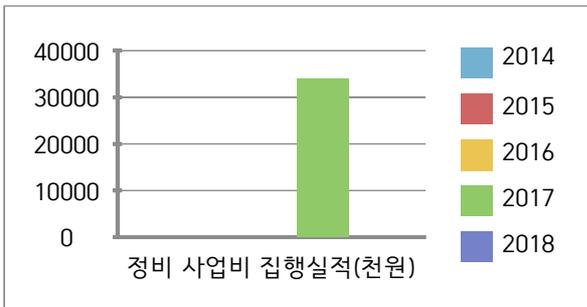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등이 미미한 사유
- 구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신축 시 내진 설계 반영 예정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동작구	44	44	44	0	0	6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0	0	0	33,938	0
지구수(개소)	1	1	1	1	1
긴급대피장소(개소)	22	22	22	74	44
안내표지판	0	0	0	70	44
경보시설(개소)	6	6	6	6	6



- ☞ 정비 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관내 지진대피소 점검 결과, 실내 구호소 30개소는 지진 긴급대피장소로 부적합하여 제외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690백만원	690백만원	690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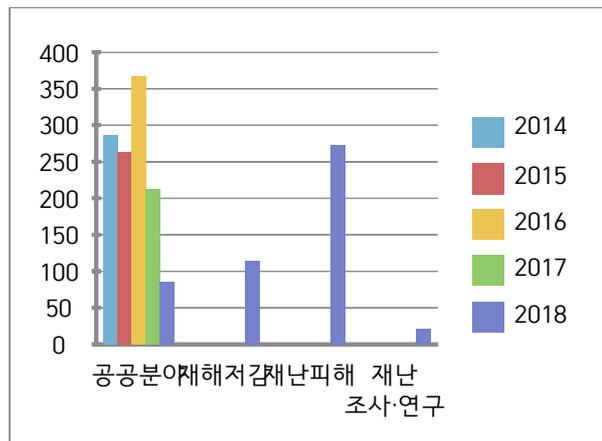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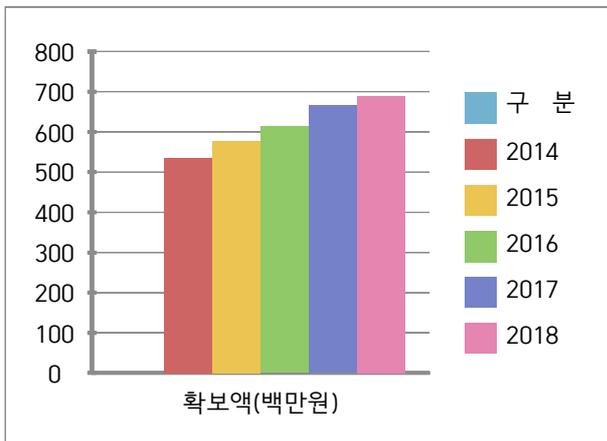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확보액(백만원)		536	578	614	665	690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287	263	367	213	85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0	0	0	0	114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0	0	0	0	273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0	0	0	0	22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 보통세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대응을 위한 시설물 보강보수 등 공공분야 재난예방 사업 등으로 지출하고 있음.
- 2018년은 2017년 대비 상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사고(재난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비용(재해 저감장치)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됨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동작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재난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재난 발생 시 관련 기관의 임무, 역할, 조치 사항 등
지진 재난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대형 화산폭발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가뭄 재난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산불 재난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7	
산사태 재난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8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행동매뉴얼	맑은환경과	2013	
대규모 수질오염 행동매뉴얼	맑은환경과	2013	
댐 붕괴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사업장 대규모 안전사고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안전치수과	2017	
감염병 행동매뉴얼	보건기획과	2011	
정보통신분야 행동매뉴얼	홍보전산과	2016	
전력기비 행동매뉴얼	맑은환경과	2016	
보건의료분야 행동매뉴얼	보건약과	2015	
지하철 대형사고 매뉴얼	교통행정과	2017	

[동작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산사태재난 행동매뉴얼	2018.4	- 신규작성	국민안전처 행동매뉴얼 표준안 시달('16)

다중밀집시설 건축물붕괴 행동매뉴얼	2018.8.	- 비상연락망 현행화	
감염병 행동매뉴얼	2018.3.	-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장 대규모 안전사고 행동매뉴얼	2018.6.	- 비상연락망,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등 정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매뉴얼	2018.6.	- 비상연락망,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등 정비	
댐 붕괴 행동매뉴얼	2018.3.	- 비상연락망 현행화	
가뭄 행동매뉴얼	2018.6.	- 비상연락망 현행화	
정보통신 행동매뉴얼	2018.5.	- 비상연락망 현행화	
정보통신 행동매뉴얼	2018.8.	- 비상연락망 현행화	

[동작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산 불 재난 행동매뉴얼	'18.4.19.	봄철 산불 예방 유관기관 합동훈련	초기진화과정, 구급구조 및 수습복구 구제화	
산 불 재난 행동매뉴얼	'18.11.20	가을철 1차 산불 예방 유관기관 합동훈련	초기진화과정, 구급구조 및 수습복구 구제화	
산 불 재난 행동매뉴얼	'18.11.21	가을철 2차 산불 예방 유관기관 합동훈련	초기진화과정, 구급구조 및 수습복구 구제화	
지 진 재난 행동매뉴얼	'18.4.16.	지진옥와대피소 대피훈련	복합재난 대피 역량 강화	
지 진 재난 행동매뉴얼	'18.9.12.	구청 인근 야외대피소 대피훈련	복합재난 대피 역량 강화	
승강기 사고 행동매뉴얼	'18.9.17.	승강기 사고, 고장시 신속한 구조 훈련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 강화	
화재 행동매뉴얼	'18.9.20.	비상소화장치합 주민교육 및 훈련	자율소방 역량 강화	
생물테러 행동매뉴얼	'18.9.27.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	생물테러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강화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 수	13	14	13	15	17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 산사태 재난, 지하철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추가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장비	안전도	등 급(그룹)
진단결과	0.202	0.948	1.000	0.208	1등급(가그룹)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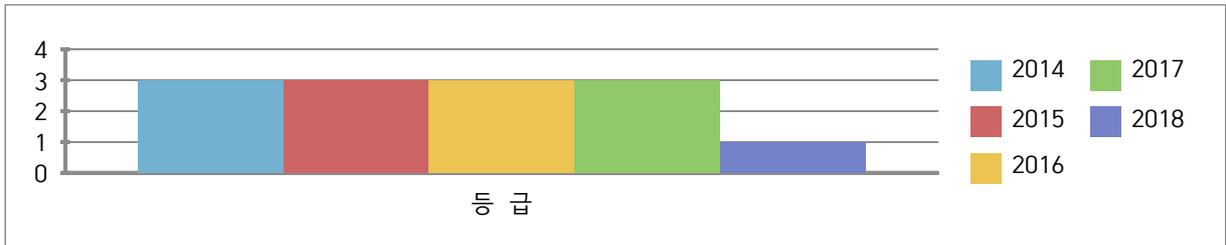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 급	3	3	3	3	1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2018년도부터 5년 주기 진단평가가 1년 주기로 바뀌고, 기준도 달라짐에 따라 우리구 지역자율방재 능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우리 구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담당관 내에 배치해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우리 구는 2018년 사구 공동협력사업 안전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둬 살기 좋고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서울시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담당자 : 임성민, 전화 : 02)820-993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마을 중심의 촘촘한 구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찾동 방문간호사 적정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22명 (1,315 → 1,322명, 증 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5명 (1,288 → 1,295명, 증 7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322명 (1,315 → 1,322명, 증 7명)

○ 일반직 계 1,317(1)명 (1,310(1) → 1,317(1)명, 증 7명)

6급이하 계 1,245명 (1,238 → 1,245명, 증 7명)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인산, 인사팀장 양혜영 (02-820-1100, 121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개정안의 규정 중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2조 및 제4조 별표3을 근거로 총원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임.

나. 방 법

○ 일반직 정원에서 8급 7명 증원

- 8급 간호직 : 1인당 연간 인건비 40,894천원×7명으로 286,256천원을 산출

※ 사비지원 : 1인당 22,500천원(집행기준액 30,000천원, 사구비 분담비율 : 75:25)

○ 2021년부터는 19년도 인건비 인상률 1.8%선을 반영하였고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인건비 산출 내역

연도	증원인원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계			1,483,743
2020년	7명		286,256
2021년		286,256천원 × 101.8%	291,409
2022년		291,409천원 × 101.8%	296,654
2023년		296,654천원 × 101.8%	301,994
2024년		301,430천원 × 101.8%	307,430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315명”을 “1,3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88명”을 “1,295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22	1,32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317(1)	1,317(1)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1(1)	34(1)	2	10	15
6급 이하 계	1,245	1,24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 정 직 계	4	4			
6급상당 이하계	4	4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288명</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1,322명 ----- -----.</p> <p>1. ----- 1,295명</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직급별 정원) (생 략) [별표 3] 정원관리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 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5</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315</td> </tr> <tr> <td>정무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0(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310(1)</td> </tr> <tr> <td>3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1(1)</td> <td style="text-align: center;">34(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6급이하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38</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238</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6급상당이하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body> </table> <p>※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p>	구 분	총 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5	1,315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10(1)	1,310(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1(1)	34(1)	2	10	15	6급이하계	1,238	1,23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p>제4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 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322</td> </tr> <tr> <td>정무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7(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317(1)</td> </tr> <tr> <td>3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5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1(1)</td> <td style="text-align: center;">34(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6급이하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45</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245</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6급상당이하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body> </table> <p>※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p>	구 분	총 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22	1,322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17(1)	1,317(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1(1)	34(1)	2	10	15	6급이하계	1,245	1,24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구 분	총 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5	1,315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10(1)	1,310(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1(1)	34(1)	2	10	15																																																																																																																																
6급이하계	1,238	1,23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구 분	총 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22	1,322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17(1)	1,317(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1(1)	34(1)	2	10	15																																																																																																																																
6급이하계	1,245	1,24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마을 중심의 촘촘한 구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찾동 방문간호사 등의 적정인력을 확충하고, 일부 직렬 간 정원을 상계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관련)

- 총 계 : 1,322명, 7명 증 (직속기관 109→116)
- 일반직계 : 1,317명, 7명 증 (직속기관 109→116명)
- 5급 소계 : 61명, 변동없음
 - 행정 : 40 → 39명, 1명 감
 - 행정또는사회복지 : 2 → 3명, 1명 증
- 8급 소계 : 356 → 363명, 7명 증 (직속기관 35→42명)
 - 간 호 : 13 → 20명, 7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1,322	842	27	116	337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317	838	26	116	337
3 급 소 계	1	1			
부 이 사 관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4 급 소 계	8	6	1	1	
서 기 관	4	3	1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2	2			
기 술 서 기 관	2	1		1	
5 급 소 계	61	34	2	10	15
행 정	<u>39</u>	<u>22</u>	2	1	14
의 무	6			6	
시 설	4	4			
행정또는사회복지	<u>3</u>	<u>2</u>			1
행 정 또 는 녹 지	1	1			
행정,보건,간호 또는 의무	2			2	
행 정 또 는 시 설	4	4			
행 정 또 는 별 정	1	1			
의 무 또 는 약 무	1			1	
6 급 소 계	262	190	5	18	49
행 정	167	119	5	4	39
세 무	15	15			
사 회 복 지	10	4			6
공 업	7	7			
녹 지	2	2			
의 료 기 술	1			1	
약 무	2			2	
간 호	3			3	
보 건 진 료	2			2	
시 설	19	19			
방 송 통 신	1	1			
운 전	6	3			3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행정 또는 세무		2	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3	2			1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녹지		2	2			
행정 또는 보건		3			3	
행정,환경,보건또는공업		1	1			
행정 또는 시설		7	7			
보건, 공업 또는 환경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간호 또는 보건		2			2	
전기 운영		1	1			
기계 운영		1	1			
7 급 소 계		406	276	10	37	83
행정		236	155	5	9	67
세무		28	28			
전산		2	2			
사회복지		32	17			15
속기		4		4		
방호		2	2			
공업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6			6	
식품 위생		1	1			
의료 기술		3			3	
약무		2			2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간	호	14			14	
환	경	3	3			
시	설	32	32			
방 송 통 신		2	2			
시 설 관 리		3	2			1
운 전		8	6	1	1	
행 정 또 는 전 산		1	1			
녹 지 또 는 시 설		1	1			
보 건 또 는 간 호		1			1	
시 설 또 는 방 재 안 전		2	2			
전 기 운 영		4	4			
기 계 운 영		3	3			
8 급 소 계		363	218	4	42	99
행 정		151	99	2	3	47
세 무		24	24			
전 산		3	2		1	
사 회 복 지		53	17			36
공 업		10	10			
녹 지		4	4			
보 건		9	2		7	
식 품 위 생		1			1	
의 료 기 술		5			5	
간 호		20			20	
환 경		1	1			
시 설		26	26			
방 송 통 신		2	2			
시 설 관 리		4	3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운	전	17	2	1	3	11
행정	또는 전 산	1	1			
행정	또는 사회 복지	6	4			2
행정	또는 시 설	4	4			
녹지	또는 시 설	2	2			
시 설	또는 공 업	1	1			
시 설	또는 방재 안전	4	4			
사 무	운 영	12	8		1	3
전 기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1	1			
9 급	소 계	214	111	4	8	91
행	정	76	39	4	2	31
세	무	3	3			
전	산	1	1			
사 회	복 지	61	5			56
공	업	6	6			
녹	지	3	3			
보	건	2			2	
의 료	기 술	3			3	
환	경	1	1			
시	설	21	21			
방 송	통 신	1	1			
시 설	관 리	1	1			
운	전	25	23		1	1
행정	또는 전 산	2	2			
행정	또는 사회 복지	7	4			3
시 설	또는 방재 안전	1	1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동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 군 (화 생 방)	2	2			
별 정 직 계	4	3	1		
6 급 상 당 소 계	1	1			
일 반 비 서	1	1			
7 급 상 당 소 계	3	2	1		
수 행 비 서	3	2	1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총 계	1,315	842	27	109	337	총 계	1,322	842	27	116	337
정무직계	1	1				정무직계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310	838	26	109	337	일반직계	1,317	838	26	116	337
3급 소계	1	1				3급 소계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8	6	1	1		4급 소계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61	34	2	10	15	5급 소계	(현행과 같음)				
행 정	40	23	2	1	14	행 정	39	22	2	1	14
행정또는 사회복지	2	1			1	행정또는 사회복지	3	2			1
6급 소계	262	190	5	18	49	6급 소계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406	276	10	37	83	7급 소계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356	218	4	35	99	8급 소계	363	218	4	42	99
행 정	151	99	2	3	47	행 정	151	99	2	3	47
세 무	24	24				세 무	24	24			
전 산	3	2		1		전 산	3	2		1	

현 행						개 정 안							
직급별	기관별	총 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직급별	기관별	총 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사회복지		53	17			36	사회복지		53	17			36
공 업		10	10				공 업		10	10			
녹 지		4	4				녹 지		4	4			
보 건		9	2		7		보 건		9	2		7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13			13		간 호		20			20	
환 경		1	1				환 경		1	1			
시 설		26	26				시 설		26	26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3		1		시설관리		4	3		1	
운 전		17	2	1	3	11	운 전		17	2	1	3	11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6	4			2	행정 또는 사회복지		6	4			2
행정또는시설		4	4				행정또는시설		4	4			
녹지또는시설		2	2				녹지또는시설		2	2			
시설또는공업		1	1				시설또는공업		1	1			
시설 또는 방재안전		4	4				시설 또는 방재안전		4	4			
사무운영		12	8		1	3	사무운영		12	8		1	3
전기운영		2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9급 소계		214	111	4	8	91	9급 소계	(현행과 같음)					
전문경력관 소 계		2	2				전문경력관 소 계	(현행과 같음)					
별정직계		4	3	1			별정직계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제2조의2)

-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기타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에 맞도록 변경(제14조제2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820-1213, FAX: 820-1188, E-mail: estragon@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의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⑧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13조 제2항 관련)

동주민센터 명 칭	동 주민 센터 소재 지		법 정 동 관 할	
	도로명주소	지 번	전자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노 량 진 제 1 동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0	동작구 노량진동 84-100	본 동	노량진동 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 길을 따라 231-112, 232-33, 225-232, 225-281, 225-238,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노 량 진 제 2 동	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48	동작구 노량진동 302-97(302-411)		노량진동 중 노량진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 도 제 1 동	동작구 상도로53길 9	동작구 상도동 437	상 도 1 동	상도동 중 1-38을 기점으로159-102, 산64, 산57, 산49 일대 를 경유하여 산39-15에 이르는 지역
상 도 제 2 동	동작구 상도로 211	동작구 상도동 25-48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
상 도 제 3 동	동작구 상대로2길 11	동작구 상도동 315-37		상도동 중 343-1을 기점으로 상도동길을 따라 187-1, 356-156, 356-224, 356-221을 경유 대방동, 산대방동, 관악구 경계를 따 라 산75-3에서 259-35, 324-1에 이르는 지역

동주민센터 명 칭	동 주민 센터 소재지		법 정 등 관 할	
	도로명주소	지 번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상 도 제 4 동	동작구 상대로29길 53	동작구 상도동 188-81		상도동 중 상도 제1,2,3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흑 석 동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동작구 흑석동 335-2	흑 석 동	
사 당 제 1 동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동작구 사당동 1004-52		사당동 중 147-3을 기점으로 사당로를 따라 321-114에서 319-44, 316-230, 303-30, 303-61, 303-111에 이르는 소도로를 경계로 한 등남지역
사 당 제 2 동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동작구 사당동 105-12	동 작 동	사당동 중 산1-1을 기점으로 동작대로자나 147-113에서 사당로를 따라 150-3, 140-168, 105를 경유 105-29에 이르는 지역
사 당 제 3 동	동작구 사당로17길 86	동작구 사당동 169-12		사당동 중 산 31-1을 기점으로 150-10에 이르는 사당로 이북지역으로서 사당제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사 당 제 4 동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	동작구 사당동 300-8		사당동 중 사당로 아남지역으로 250-6을 기점으로 272-35,를 지나 278-99, 산44-7, 288-34, 300-54(공원), 산45-14, 산45-6을 경유 사당1동 경계를 따라서 321-1에 이르는 지역
사 당 제 5 동	동작구 사당로27가길 219	동작구 사당동 228-11		사당동 중 사당 제1, 2, 3, 4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대방동	동작구 역대방로44길 20	동작구 대방동 501-2(350-8,350-9)	대 방 동	
신대방 제 1 동	동작구 신대방길 72	동작구 신대방동 604-8		신대방동 중 640을 기점으로 698,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따라 710 아남지역과, 492-200에서 산44-3을 지나 도림천에 이르는 이북지역
신대방 제 2 동	동작구 역대방로24길 76	동작구 신대방동 723		신대방동 중 신대방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의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4.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⑧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현 행				
동 주민센터 명칭	동 주민 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도로명주소	지 번	전자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노량진 제1동	동작구 장승배기28길 30	동작구 노량진동84-100	본 동	노량진동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225-232, 225-281, 225-238,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노량진 제2동	동작구 장승배기19길 48	동작구 노량진동 302-97(302-411)		노량진동중 노량진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도 제1동	동작구 상도로53길 9	동작구 상도동437	상도1동	상도동중 1-38을 기점으로159-102, 산64, 산57, 산49 일대를 경유하여 산39-15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2동	동작구 상도로 211	동작구 상도동 25-48		상도동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3동	동작구 상대로2길 11	동작구 상도동 315-37		상도동중 343-1을 기점으로 상도동길을 따라 187-1, 356-156, 356-224, 356-221을 경유 대방동, 산계방동, 관악구 경계를 따라 산75-3에서 259-35, 324-1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4동	동작구 상대로29길 53	동작구 상도동 188-81		상도동중 상도제1,2,3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흑석 동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동작구 흑석동 335-2	흑 석 동	
사당 제1동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동작구 사당동 1004-52		사당동중 147-3을 기점으로 사당로를 따라 321-114에서 319-44, 316-230, 303-30, 303-61, 303-111에 이르는 소도로를 경계로 한 동남 지역
사당 제2동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동작구 사당동 1136-1	동 작 동	사당동중 산1-1을 기점으로 동작대로자나 147-113에서 사당로를 따라 150-3, 140-168, 105를 경유 105-29에 이르는 지역
사당 제3동	동작구 사당로17길 86	동작구 사당동 169-12		사당동중 산 31-1을 기점으로 150-10에 이르는 사당로 이북지역으로서 사당제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사당 제4동	동작구 사당로16야길 6	동작구 사당동 300-8		사당동중 사당로 아남지역으로 250-6을 기점으로 272-35, 278-99, 산44-7, 288-34, 300-54(공원), 산45-14, 산45-6을 경유 사당동 경계를 따라서 321-1에 이르는 지역
사당 제5동	동작구 사당로27야길 219	동작구 사당동 228-11		사당동중 사당 제1, 2, 3, 4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대방동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동작구 대방동 501-2(350-8,350-9)	대 방 동	
신대방 제1동	동작구 산계방길 72	동작구 산계방동 604-8		신대방동 중 640을 기점으로 698,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따라 710 이남 지역과, 492-200에서 산144-3을 지나 도림천에 이르는 이북지역
신대방 제2동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06	동작구 산계방동 355-9		신대방동 중 신대방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개 정 안

동 주민센터 명칭	동 주민 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도로명주소	지 번	전자역할	일 부 지 역 관 할
노랑진 제1동	동작구 장승배기28길 30	동작구 노랑진동 84-100	본 동	노랑진동 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225-232, 225-281, 225-238,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노랑진 제2동	동작구 장승배기19길 48	동작구 노랑진동 302-97(302-411)		노랑진동 중 노랑진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도 제1동	동작구 상도로53길 9	동작구 상도동 437	상도1동	상도동 중 1-38을 기점으로 159-102, 산64, 산57, 산49 일대를 경유하여 산39-15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2동	동작구 상도로 211	동작구 상도동 25-48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에서 상도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3동	동작구 상대로22길 11	동작구 상도동 315-37		상도동 중 343-1을 기점으로 상도동길을 따라 187-1, 356-156, 356-224, 356-221을 경유 대방동, 산대방동, 관악구 경계를 따라 산75-3에서 259-35, 324-1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4동	동작구 상대로29길 53	동작구 상도동 188-81		상도동 중 상도 제1,2,3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흑석동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동작구 흑석동 335-2	흑석동	
사당 제1동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동작구 사당동 1004-52		사당동 중 147-3을 기점으로 사당로를 따라 321-114에서 319-44, 316-230, 303-30, 303-61, 303-111에 이르는 소도로를 경계로 한 동남 지역
사당 제2동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동작구 사당동 105-12	동작동	사당동 중 산1-1을 기점으로 동작대로지나 147-113에서 사당로를 따라 150-3, 140-168, 105를 경유 105-29에 이르는 지역
사당 제3동	동작구 사당로17길 86	동작구 사당동 169-12		사당동 중 산 31-1을 기점으로 150-10에 이르는 사당로 이북지역으로서 사당제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사당 제4동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	동작구 사당동 300-8		사당동 중 사당로 아남지역으로 250-6을 기점으로 272-35,를 지나 278-99, 산44-7, 288-34, 300-54(공원), 산45-14, 산45-6을 경유 사당동 경계를 따라서 321-1에 이르는 지역
사당 제5동	동작구 사당로27길 219	동작구 사당동 228-11		사당동 중 사당 제1, 2, 3, 4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대방동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동작구 대방동 501-2(350-8,350-9)	대방동	
신대방 제1동	동작구 신대방길 72	동작구 신대방동 604-8		신대방동 중 640을 기점으로 698,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따라 710 이 남지역과, 492-200에서 산144-3을 지나 도림천에 이르는 이북지역
신대방 제2동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동작구 신대방동 723		신대방동 중 신대방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일부개정 이유

수수료 관련 상위 법령 개정 및 징수(감면) 관련 규정에 맞게 수수료 금액 및 감면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 발급수수료 전액 면제 조항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

나. 별표 제1호차목의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징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주무관(전화: 820-9034, 팩스: 820-4011, E-mail : wednesday7@ dongjak.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 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나목(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증명) (2) 세목별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차목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신 설></p> <p>제7조(징수시기) ①·② (생 략)</p> <p>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 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나목(재산 및 지방 세에 관한 증명)의 (2) 세목별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p> <p>[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2종)</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공개대 상</th> <th colspan="2">공개방법 및 수수료</th> </tr> <tr> <th>열람시청</th> <th>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th> </tr> </thead> <tbody> <tr> <td>문서·도 면·사 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필름 테이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body> </table>	공개대 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 면·사 진 등	(생 략)	(생 략)	필름 테이프 등	(생 략)	(생 략)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 례」에 의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 표의 「수수료의 종류 수금액」 제1호(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나목(재산 방세에 관한 증명)의 (2)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7조(징수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2종)</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공개대상</th> <th colspan="2">공개방법 및 수수료</th> </tr> <tr> <th>열람시청</th> <th>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th> </tr> </thead> <tbody> <tr> <td>문서·도 면·사 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필름 테이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 면·사 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필름 테이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개대 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 면·사 진 등	(생 략)	(생 략)																					
필름 테이프 등	(생 략)	(생 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 면·사 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필름 테이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생 략)	(생 략)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자파일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교 > (생 략)			< 비교 >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실제 운영에 맞게 일괄정비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 주체를 센터장에서 동작구청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안 제31조)

나. 중간지원조직 및 운영위원회 내용 삭제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으며(안 제24조제3항), 사용료 감면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라. 계약 내용변경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1호의2서식)

마. 문구 및 오탁자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안 료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0692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9층 생활경제과
- 전화 : 02-820-9668, 팩스 : 02-820-4083

서울특별시 동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 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센터 업무공간”을 “입주사무실”로,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심사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심사 평결결과”를 “입주심의 평가결과”로, “평결결과”를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를 “정부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순위”를 “평가결과”로, “통보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사”를 각각 “심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약정서”를 “구청장과 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를 “심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약정서”를 “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주연기 신청 없이 입주개시일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하나에”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을 “별지 제1

호의2서식의 계약 내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비)창업자”를 “(예비)창업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입주사무실 입주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중간 운영평가 보고서를 센터장에게”를 “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약정해지 및 강제타거)”를 “(계약해지 및 강제타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약정해지”를 “계약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센터에”를 “구청장에게”로,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하자고”를 “사용하고자”로, “센터장에게”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09시”를 “9시”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센터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필요시 퇴거하는 입주자에게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퇴거하는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5호 중 “운영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자치위원회가”를 “구청장이”로 한다.

같은 조 제14호 중 “입주자 자치위원회에서”를 “입주자는 구청장이”로, “대해서는”을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사무실”을 “입주공간”으로, “센터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10%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2) ※다른감면사유와 중복감면(할인) 불가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820-9131, FAX : 820-9977, E-mail : yji101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감면 불가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신설)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사용료 등 감면(제10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 면 대 상</th> <th>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td> <td>100%</td> </tr> <tr>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td> <td>100%</td> </tr> <tr> <td>「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td> <td>50%</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td> <td>100%</td> </tr> <tr> <td><신설></td> <td></td> </tr> </tbody> </table>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신설>		<p>[별표 2] 사용료 등 감면(제10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 면 대 상</th> <th>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td> <td>100%</td> </tr> <tr>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td> <td>100%</td> </tr> <tr> <td>「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td> <td>50%</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td> <td>100%</td> </tr> <tr> <td>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td> <td>10%</td> </tr> </tbody> </table>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	10%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신설>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감면 불가	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20호

설계공모 공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구립 김영삼도서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용역명	○ 구립 김영삼도서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용역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 대지면적 : 1,245㎡(제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6,237.75㎡ ※사용승인일 2015.9.25.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로 건축(철거 포함),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일체 ※ 내진설계, 철거설계, 석면조사 등 설계과업내용에 필요한 업무 일체 포함
예정공사비	○ 2,000,000천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 129,206천원(부가세 포함) ※ 설계과업내용에 포함된 업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됨
공모목적	○ 동작구 대표 도서관으로서 주민의 지식문화 향유 및 문화기반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계획을 위해 설계공모 시행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공동응모 가능, 과반수 초과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 ○ 응모 신청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외국건축사면허업체는 위 요건을 가진 국내건축사(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상세내용 설계공모지침서 참가자격 참조
응모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년 4월 4일(목) 09: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건축과(본관 2층) ※ 설명회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같음(단, 과업내용서는 추후 당선자와 설계계약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

등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모신청서 1부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등록 시) ○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 받아 제출 ○ 보안각서 1부
질의 접수 및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접수] : 2019년 4월 8일(월) 09:00 ~ 18:00 - 서면 (FAX : 02-820-9984) 또는 e-메일 (tyyhjh99@dongjak.go.kr)로 제출 ○ [질의 회신] : 2019년 4월 10일(수) 구 홈페이지 건축과 행정자료실에 일괄 게재 ※ 개별회신 없음
공모안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5월 8일(수) 09:00~18:00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시설팀(본관 2층) ※ 건물 내부를 확인하고 싶은 참가자는 유선(02-820-9822)으로 약속을 잡고 현장 방문 가능
심사방법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 심사위원 명단 공개(공고시 동작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개) ○ 당선작 공개(동작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개)
입상작품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작(최우수작) 1점 : 해당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및 상장 ○ 입상작 : 응모작품 수에 따라 상장 및 보상금 지급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건축과/행정자료실】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입찰보증금 없음
문 의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 동작구청 건축과 ○ 전화 : 02) 820-9822(담당 유태운), 전송 : 02)820-998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424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예규「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거법령 및 관련서식을 현행화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활성화 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 적용(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제2항제1호, 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의2서식, 안 별지 제15호서식, 안 별지 제19호의1서식, 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안 별지 제19호의3서식, 안 별지 제22호서식, 안 별지 제24호서식, 안 별지 제35호서식, 안 별지 제36호서식)
- 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출서식의 현행화(안 제20조제2항제4호, 안 제22조제2항제4호, 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의2서식, 안 별지 제13호의3서식, 안 별지 제13호의4서식, 안 별지 제15호서식)
- 다. 공유재산업무편람 건의사항(안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 라. 소상공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 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820-9002, FAX : 820-9993, E-mail : whitefox@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를 “제7조제3항”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형태)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형태)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사용목적) ① 동작구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제2항4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사용목적) ① “임차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 목적으로 사용한다.
- ②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7조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8조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2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0조제4항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10조제4항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11조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제10조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제12조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5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를 “「서울특별시 동작 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2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7조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8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9호의1서식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88조의 규정에 의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및 동조례시행규칙”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기재요령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기재요령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p> <p>② (생 략)</p> <p>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p> <p>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개정 2009.11.16></p> <p>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개정 2009.11.16></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11.16></p> <p>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개정 2009.11.16></p> <p>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p> <p>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에 포함)에 소재하</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 -----</p> <p>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제7조제3항에 ----- -----</p> <p>2. (삭제)</p> <p>3. (삭제)</p> <p>4. (삭제)</p>

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20조(등기수속 등) ② (생략)
1.~ 3.(생략)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제22조(신축 등 신청) ② (생략)
1.~ 3.(생략)
4. 도면

[별지 제10호 서식]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동작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형태)

제22조(신축 등 신청)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도면,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① 동작구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〇〇〇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정권이 정한 운영권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동작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
 서를 동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작구에서 허
 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
 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동
 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
 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
 수는 일할 계산하고, 다년계약에 있어 대부료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

 3.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①“임차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대
 부재산”이라 한다)을 ○○○○ 목적으로 사용 한다.
 ②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
 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
 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대부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 부료를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시동작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 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 한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0조(수익권) ④“갑”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의 2 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0조(수익권) ④“갑”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의 3 서식]

제4조(대부료 납입) ----- 「서울특별시 동 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령」-----

제7조(행위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12조(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0조(수익권)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지 제13호의2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0조(수익권)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지 제13호의3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의 4 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

교환계약서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구유재산매매계약서

제2조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 ①“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①“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지 제13호의4서식]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서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지 제14호서식]

교환계약서

제5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구유재산 매매 계약서

제2조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8조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1조 ① -----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시행령」-----

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의1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 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불입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귀하

[별지 제19호의1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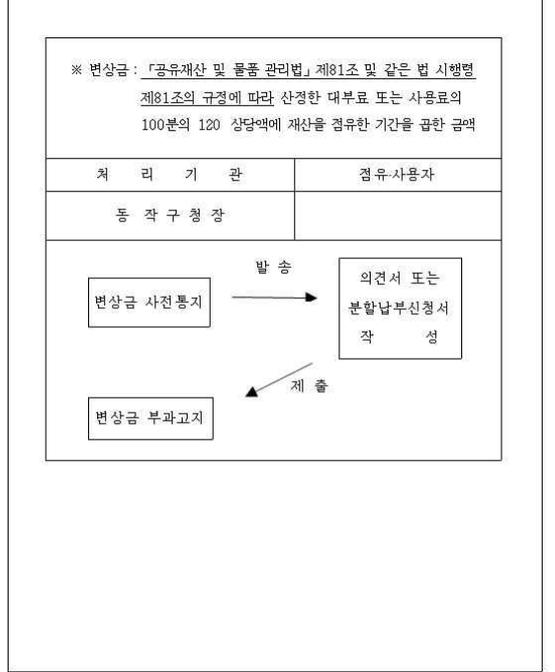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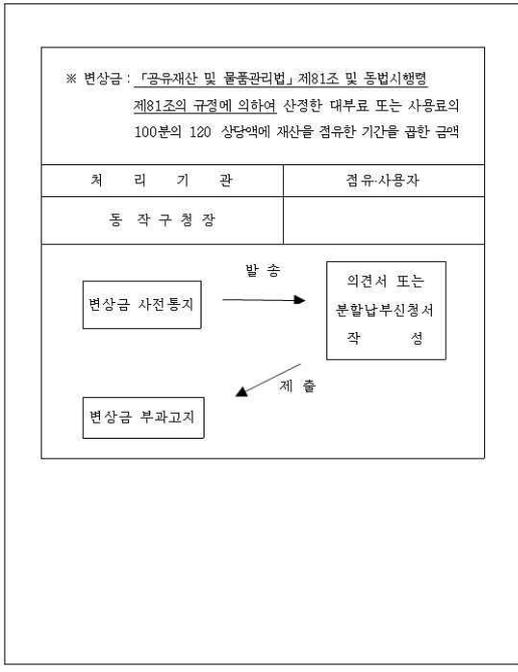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 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불입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귀하



[별지 제19호의 2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				의견
소재지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신청인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				의견
소재지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신청인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9호의 3 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 의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점유면적 (㎡)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 (원)	연부이자 (원)	합계	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동 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9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 의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점유면적 (㎡)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 (원)	연부이자 (원)	합계	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동 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2호 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개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권 륙	

3. 사용 신청기간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동 작 구 청 장 귀 하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

동 작 구 청 장 인

[별지 제22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개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권 륙	

3. 사용 신청기간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동 작 구 청 장 귀 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

동 작 구 청 장 인

[별지 제24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
 한다.
-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건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동 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4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 한다.
-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건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동 작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35호 서식]

물품수입및출급원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⑥ 정리구분 :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60조

“별표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비품출납및운용카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⑩ 정 리 구 분 :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 관리조례 제60조

“별표3”의 정리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물품수입및출급원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⑥ 정리구분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별지 제36호서식]

비품출납및운용카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⑩ 정 리 구 분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인사발령

[발령 제71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류승희	복직을 명함 기획재정부 국재무과 근무를 명함	생활경제과	지방행정서기

2019. 3. 25. 字.

동
작
구
보

제
1
5
9
2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

 동 직 구